■ 학생활동

Kangnam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학 생 준 칙 학 생 상 벌 에 관 한 규 정 학생상벌에 관한시행세칙 학생단체의등록과 운영에관한규정 고시반운영규정 게시물관리규정 학생주요행사

학생준칙

제1장 학생증

제1조 입학절차를 마친 학생은 관계부서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학생증을 신청 교부 받아야 하며, 학적변동 사항(졸업, 퇴학, 제적 등) 및 유효기간 결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조 학생증은 본교에서 지정하는 은행의 현금직불카 드로 교부되며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은행약관 에 따른다.

제3조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 으로 학생증을 변조할 수 없다.

제5조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 시험 또는 도서열람실의 출입 및 학생증의 제시가 필요한 교내시설의 이용을 불허한다.

제6조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학생증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집회

제7조 교내 · 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모든 집회 및 결사는 학칙 제58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 정 2008.08.01>

제8조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신고서를 집회 예정 7일(공휴일포함)전까지 학생처장에게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집회시간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락되며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8.01>

제9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학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는 학칙 제56조에 의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3장 학생자치단체의 피선거권과 조직운영에 대

한 규정

제13조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정·부회장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 2018.09.17>

- 1. 학생자치단체의 정·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2.5이상 이어야 한 다.
 - 2. 학생자치단체장 출마시 학기제한은 아래와 같다. 가. 정 - 4학기 이상 7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나. 부 - 2학기 이상 7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 3.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았던 자는 학생자치단체의 정·부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나 대학장 및학부(과)장의 추천서를 제출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14조 학생자치단체는 학년 초에 소정양식에 의한 활동내용과 임원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5조 총학생회 활동에 따르는 운영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는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8.01>

제16조 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출은 활동세부계획서 및 예산서를 학생처 장학복지팀에 제출하여 학생처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8.01>

제17조 학생 및 교내 학생단체는 정당 또는 이에 관련되는 사회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장 교외활동

제18조 학생이 교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참가 7일전(공휴일 포함)에 인정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원을 제출,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개정 2008.08.01>

제19조 국가적 행사 이외에는 시험기간중 교외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제20조 허가된 교외행사 참가기간동안은 수업에 출석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학생은 학생처장의 허가없이 교외행사에 단체로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8.08.01>

제22조 (행사동원) 총장의 동원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 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제23조 본 준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준칙개정은 교무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① 이 준칙은 서기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 준칙은 서기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 준칙은 서기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 준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개정 준칙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폐지규정) 이 개정 준칙의 시행과 동시에 학생준칙
- 의 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① 이 개정 준칙은 1995년 1월10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개정 준칙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 준칙은 199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⑩ 이 개정 준칙은 199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⑪ 이 개정 준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 준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 준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A) 이 준칙은 2008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⑤ 이 준칙은 2018년 09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학생지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 칙 제55조 및 제56조에 의거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기 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규정을 시행할 때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3조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포상

제4조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을 받을 수 있다.

- 1. 학교와 사회발전에 공적을 남긴 학생
- 2.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 3.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제3장 징계

제5조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제6조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징계의 양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제7조 경고 및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이 금지되며 경고 및 근신 이외 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제8조 총장은 징계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징계의 발의와 심의, 징계해제 등에 관한절차는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 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삭 제)

제12조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이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개정 규정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개정 규정은 199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①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⑨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⑩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상벌에관한시행세칙

제1조(적용범위) 본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다만, 학업성적, 출결상황 및 미등록등의 교무행정상의 사유는 이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지아니한다.<개정 2011.3.1>

제2조(포상의 종류 및 대상) 학업상, 공로상, 문화상 및 봉사상으로 한다.

학업상:재학4년간의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최우수한 학생과 각 학부/학과에서 최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공로상:사상이 건전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어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문화상:각 부문에서 우수한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 다.

봉사상:학교내외에서 선행을 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 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의 발의) 위 제2조의 포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 1. 공적조서 1부.
-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3. 학부/학과장 의견서 1부.

제4조(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1.3.1, 2017.10.20, 2021.06.17.>

- 1. 본교 건학정신을 위배한 자.
- 2.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3. 교직원의 학생지도에 불손한 태도나 반항을 하여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 4. 학내에서 절도, 폭력, 폭언을 행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자.
- 5. 총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

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6. 시험 및 각종 제출물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한 자.
- 7. 각종 제 증명서를 위조, 조작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방조한 자.
- 8. 학내 통신망,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부당 사용하여 무단유출, 파괴, 변경함으로써 운용을 방해한 자.
- 9. 학교 및 관련 시설물을 무단 점유하여 훼손하거나, 업무에 방해를 초래한 자.
- 10. 교내·외를 막론하고 정치,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을 한 자.
- 11. 학교 재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반출한 자.
- 12.「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한 징 계요청이 있는 자.
- 13. 학교의 안정을 해치거나 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자. <신설 2021.06.17.>
- 14. 총장의 경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 <신설 2021.06.17.>
- 15.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21.06.17>

제4조의2(징계의 종류 및 양정) ①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한다.

- ② 징계의 양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근신은 7일 이내
- 2. 유기정학은 7일 이상 1개월 이하
- 3. 퇴학은 학칙 제29조 2호에 의한 제적
- ③ 징계의 양정은 교무위원회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정하되, 근신 2회 이상 받을 경우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 3개월 초과 정학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퇴학을 의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1]

제4조의3(봉사명령) ① 징계에 회부된 학생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의2 제1항의 징계처분 을 하기 전에 봉사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

- ② 봉사명령의 종류, 시간, 방법 등은 징계대상 행위의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정한다.
- ③ 봉사명령이 적절히 이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3.1]

제5조(징계의 발의) 위 제4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 1. 사건경위서 1부
- 2. 본인의 진술서(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 1부
- 3. 학부/학과장 의견서 1부

제6조(징계자의 특별지도)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 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소속 학부/학과장의 계속 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3.1>

제7조(심의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3.1>

1. 포상대상자

가. 학생처장은 포상대상자로 제2조의 조건을 갖춘 학생이 추천되면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교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 학생처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부/학 과장을 경유하여(삭제)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징계대상자

가. 학생처장은 제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위원회 의 심의에 회부한다.

나. 학생처장 또는 교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당 또는 참고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다. 학생처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부/학 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징계의 해제) 학부/학과장으로부터 징계학생에 대한 징계해제의견서가 제출되면 학생처장은 교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학부/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있다.<개정 2011.3.1>

제9조(통보) 포상은 공개하되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처장은 위의 사실(포상, 징계)을 학부/학과장, 교무처장 및 학부모와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

무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이 시행세칙은 198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8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세칙은 199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세칙은 1993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세칙은 199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세칙은 199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세칙은 199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세칙은 200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개정세칙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13)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 이 세칙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6) 이 세칙은 2021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단체의등록괴 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57조 내지 제58조에 관련하여 학생단체(이하 "단체" 라함)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적용범위) 단체란 본교 총학생회 부서 산하에 있 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를 통칭한다.

제3조(등록요건)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학생자치활동에 부합되어야 할 것
- 2. 단체의 설립취지와 이념에 찬동하는 15명이상의 회원 연명부와 그들의 입회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3. 지도교수는 동아리 및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대 하고 학생처 장학복지팀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 4. 부정적이며 건전하지 못하여 대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단체는 등록을 불허한다.

제4조(등록절차) ① 신규등록 : 단체로서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 구비서류를 각2부 첨부한 후 지도교 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처 장학복지팀에 제출한다. <개 정 2008.08.01>

- 1. 단체등록 신청서(소정양식)
- 2. 지도교수의 추천서
- 3 회 칙
- 4. 활동 계획서 및 예산안(소정양식)
- 5. 발기인의 명단과 발기인 총회 회의록
- ② 재등록
 - 1. 단체등록 신청서(소정양식)
 - 2. 회 칙
 - 3. 임원 및 회원 명단과 입회원서
 - 4.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서(소정양식)
 - 5. 신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서
 - 6. 이상의 구비서류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제5조(승인) 제4조에 의거 단체등록 신청을 마친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 로 인정된다.

제6조(임원선출) 임원은 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선출 하되 그 명단은 7일 이내에 총학생회를 경유 학생처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교수) ① 학칙 제58조에 의거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체로부터 추대받은 후 총장이승인한다.

- ② 지도교수 해당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 ③ 지도교수가 해외연수나 출장,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단체를 지도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의 기본 품의서 에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단체가 지도교수를 추대할 때는 지도교수의 전공, 부전공, 기타 취미활동이 해당 단체의 활동 내용과 부 합되는 전임교수로 한다.

제8조(재정 및 시설지원) ①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의 재정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② 학생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대학생의 본분에 일치하며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 여한 여부
- 2.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문화적, 공헌 여부
 - 3. 행사계획의 건전성과 활동의 모범성 여부
 - 4. 전년도 활동실적 여부
- ③ 단체의 성격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취소, 감액할 수 있다.
 - 1.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단체
- 2. 타 대학과의 동아리나 본교 단체로서의 특수성이 없는 단체
- 3. 단일 학부/학과나 혹은 동향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성되는 단체
 - 4. 대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며 건전하지 못한 단체
 - 5. 과거 1년간의 활동실적이 미진한 단체
 - 6. 활동실적보고, 결산보고를 하지 않는 단체
 - 7. 동아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단체
 - 8. 학교행사나 총학생회의 행사에 불참 또는 비협조

적인 단체

- 9. 학교 제규정을 준수치 않는 단체
- ④ 단체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소속단체의 전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 ①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행사에는 집회신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행사가 정상수업과 중복될 경우는 지도교수와 학부 (과)장의 수업처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8.08.01>
- ④ 야간 옥외집회는 학교환경보고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단, 부득이 옥외집회를 할 경우지도교수의 의견서가 첨부 제출되어야 하며 허가를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야간 옥외집회시 불꽃놀이, 횃불, 모닥물 등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부득한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⑥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티켓, 기타 유인물의 제작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의 사전지도와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인쇄물을 배포코자 할 경우 인쇄물 배포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 ① 모든 게시물은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한다. 단, 그 매수 및 장소는 게시허가 받을 때 조정받아야 한다.
- ⑧ 매학기 중간 또는 기말(전교생이 실시하는 시험포함)고사 개시10일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각 단체의 행사(집회)는 허가되지 않는다. 각 단체는 각행사의 완료 후 5일 이내에 결산 및 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 경유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총학생회의 외비보조를 받은 행사인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집회신고서의 제출절차) ① 학부/학과 단위의 학생행사

1. 행사 및 집회신고서는 해당 전공주임교수가 원안 결재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대표가 학생처장에 게 제출한다.

- 총학생회비의 보조를 요청할 때에는 총학생회장
 경유하여야 한다.
- ② 동아리 단위의 학생행사

동아리대표자는 지도교수로 부터 행사 및 집회신고 서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집회신고서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 ① 정기집회 (월례 및 총회)및 단체의 운영에 관련된 일반집회는 7 일(공휴일 포함)전에 집회 신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예술 및 체육행사는 행사 개최 10일전에 행사내용 개요, 예산관계 대본 및 주체내용의 요약, 학부(과) 장 의견서, 홍보물의 제작과 그 배부관계에 관련한 허가원을 첨부하여 집회신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1>
- ③ 타 대학이나 다른 기관과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14일전에 행사개최의 취지와 목적, 행사 내용, 설명서, 예산서, 참가교 동의서 및 참가인원, 홍보물 제작배부 허가원을 첨부하여 집회신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간행물의 발간허가 신청) ① 학칙 제58조에 의거 재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은 인쇄물발간 허가원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1>

② 간행물의 편집 인쇄 및 배부 등 자세한 것은 총학생회규칙에 따른다.

제13조(봉사활동) ① 봉사활동은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워칙으로 한다.

- ②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방학시작 30일 전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 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봉사활동 계획서
 - 2. 예산계획서
 - 3. 참가학생의 명단
- ③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단원수는 20명이상, 봉사기간 은 3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결산서, 자체평가서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된 단체로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생복지운 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 등록을

KANGNAM UNIVERSITY

취소할 수 있다.

- 1. 총학생회 규칙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 2. 대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며 건전하지 못한 활동을 할 경우
- 3. 학교 행사나 총학생회의 행사에 불참 또는 비협 조적인 경우
 - 4. 본교 제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 5. 지도교수의 사임서가 수리된 14일 이내에 후임지 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제15조(단체의 해산) 재등록 시 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는 학생단체 등록마감일 이후 자동 해체로 간주한다. 제16조(단체활동의 잠정적 중지) 졸업준비위원회 등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는 업무(앨범 및 교지제작)가 끝나면 물품의 납품과 함께 다음의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지 또는 해산한다.

제17조(보칙) ①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는 학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복지운 영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① 이 규정은 1983년 1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규정은 1995년 1월10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체등록 신청서

		한세중국 한경시
수	신	강남대학교 총장
참	조	학생처장
제	목	학생활동 단체 등록 신청의 일
경 동아리	유 연합회	변점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학부/학과 년 성 명: (인) 지도교수: (인)
별 첨	서 류	1. 규약 또는 정관 1부 2. 단원명부 1부 3. 활동 실적서 1부 4. 활동계획 및 예산서 1부 5. 지도교수 의견서 1부

활동계획 및 예산서

사	업	명	실시기간	장	소	예	산	비	고
						"		'	

사업실적 보고서

사	업	명	실시기간	장 소	예 산	비고



인 쇄 물 배 포 원

계	팀	장	처	장

배	포 물	명									
배	포 일	자				발형	행일				
హ 보 목 전											
품 벼 ю 돼								인 쇄 구 분	1. 활7 2. 등 7 3. 복 7 4. 옵션 5. 기타	사(철필, 사 셑	타자)
ボ 						(발행 [및 배포	쿠수 :		/)
인	쇄 처	명				발행(배	포)처명				
내											
фo											
			위와 같이	배포하.	고자 혀	하오니 허	락바랍니	니다.			
				20							
			신청인		부(반	·)장		(인)		
화		인	지도교수 :					(인)			
바	● 배포물 2부 첨부하여 제출할 것.										

			계	팀 장	처	장
게 시 ·	물 설 치 허 가 원					
게 시 물 명						
게 시 기 간	20		의뢰			(외부)
" ' ' '	20	- H - 단	체			
			.			
게 시 내 용						
위와 같이	게시물 설	치 허가원을	을 출원하오	.니 허락	바랍니다.	
	20 .				. –	
			비 /취 -	71.		
	신청부서 :		반 (학교	<u>-</u> 'F)		
	신 청 인 :	학과		년		
확 인	지도교수 :				(인)	



고시반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남대학교 고시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시험준비를 지원하며 아울러 전체 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고시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2009.02.19>

- 1. 각종 시험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상담
- 2. 학력증진을 위한 특별지도
- 3. 기타 심전생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 부의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각종 국가고시를 위하여 시험준비반을 둘 수 있다.

- ② 전항의 시험준비반을 지도·관리는 고시반운영위원 회에서 한다. <개정 2009.02.19>
- ③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2.19>

제4조(소관부서) 고시반의 소관부서는 학생처 심전생활 관으로 하며 고시반의 지도,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개 정 2009.02.19>

제5조(운영위원회) 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반 운영위원회를 둔 다. <개정 2009.02.19>

제6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 심전생활관 교육자문위원이 겸한다. <개정 2009.02.19>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처 심전생활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09.02.19>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2.19>

- 1.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본 고시반의 관련 규정의 개정, 폐지(안)의 심의
- 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임기)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 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지도교수) <삭제> 2009.02.19

제11조(고시반 학생의 선발) 고시반에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시반 학생은 당해 학부/학과의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하되 선발 방법 및 절차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고시반 학생) ① 고시반에 선발된 학생 중 학업 성과가 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 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02.19>

② 고시반 학생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업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수칙) 위원회는 고시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고시반 학생이 지켜야 하는 수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9>

제14조(퇴실) ① 고시반 학생이 수칙 및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업에 정진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실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02.19>

② 고시반 학생이 퇴실할 경우 장학금 수혜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9>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① 이 규정은 1998년 6월 24일부터 실시한다.
- ②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게시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벽보, 현수막 등 각종 교내 게 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물 게재자들에게 기 회균등을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옥 내·외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시물 관리부서) 게시물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 각 목과 같다. <개정 2008.08.01, 2016.03.23, 2018.09.17>

- 1. 외부관련 게시물 : 안전시설팀 및 게시물의 부착 주체나 게시 내용에 관련이 있는 부서
 - 2. 학생관련 게시물

가. 학생처 장학복지팀 : 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 게시물

나. 각 교학팀 : 소속 학생회 게시물

다. 기타 : 게시물의 주체나 게시 내용에 관련이 있는 부서 <개정 2016.03.23.>

제3조(게시물 관리 실무위원회)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팀·장학복지팀 소속 직원 각 1명,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생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는 게시물 관리 실무위원회를 두어 게시물의 내용,게시 기간, 지정 장소에의 부착 여부, 게시물 철거 등게시물 관리 전반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6.03.23>

제4조(게시물의 분류) 이 규정에 적용하는 게시물의 분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형태별 분류
- 가. 벽보
- 나. 현수막
- 다. 입간판
- 2. 내용별 분류

가. 행사 홍보 : 축제, 학술제, 초청강연, 공연 등

나. 일반 홍보 : 공지사항 등

다. 단체 홍보: 동문회, 동아리 안내 등

제5조(게시물 부착 허가) ① 외부에서 의뢰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안전시설팀에서 허가된 게시물만부착이 가능하다. <개정 2016.03.23.>

② 교내 게시물은 제작 주체별로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단, 불법·미확인단체 게시물, 비방 및 유언비어 등의 게시물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03.23.>

제6조(게시 준수 사항) ① 게시물에는 반드시 게시 주 체가 명시되어야 한다.

- ② 게시물의 주제와 내용이 교육목적과 사회 일반 통념 및 상식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각종 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④ 각종 게시물의 부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간 경과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1. 행사 홍보: 행사 시작 2주전부터 종료시까지
 - 2. 일반 홍보 : 게시일로부터 2주간
- 3. 단체 홍보 : 동문회, 동아리 등의 단체 안내에 관한 홍보는 각 학기별 개강 일로부터 4주간

제7조(게시물의 제거) 부착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게시물의 내용이 훼손되었을 경우, 지정된 장소 이외에 부착된 게시물 등 제6조의 게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학생은 항상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주시하여야 한다.

- (1)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8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주요행사

목양축전

목양축전은 본교 개교기념 축전으로 전체학생이 참가하는 종합 행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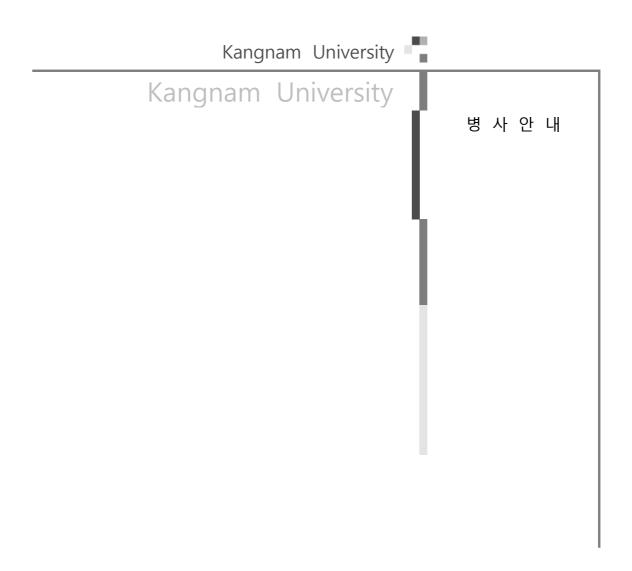
5월의 푸르름과 함께 각 학부(전공)·학과별로 전통과 전공을 살려 주최하는 학·예술 행사와 각 동아리별 각 종 전시회, 발표회, 바자회, 체육행사, Contest, 카니발 등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 행사는 교직원, 동문, 학부모 및 내외귀빈이 함께 참 여하는 가운데 모든 학생활동이 집약되는 행사로서 대학인으로 대학의 발전을 추구하고, 낭만을 즐기며, 또한 강남인 으로서의 위치와 사명을 확인하는 제전이다.

백양체전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젊음을 포효하며, 건전한 정신함양과 명랑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각 학부(전공)·학과 대항으로 축구, 농구, 피구 등의 각종 구기종목과 해마다 다양한 개인 종목을 선정, 개최하여 스포츠 정신을 함양함은 물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소중한 가치를느낄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 화합의 장이 펼쳐지는가을 잔치이다.





병사안내

1. 재학생 입영연기제도 변경

- 가. 각 대학의 조기 졸업제, 복수전공제 도입 운영 등다양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고,학업의 계속성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학교별제한연령내에 졸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하여 의무 부과하던 제도를 99년부터는 졸업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계속 입영 연기.
- 나. 따라서 21세기 이후에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일반휴학 후 복학의 지연 또는 휴학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불가능한 사람 그리고 이미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입영이 연기되어 있는 사람도 계속하여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 연기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교	당해학교 졸업시까지
전문대학	2년제	22세
CE에의	3년제	23세
	4년제	24세
대 학	5년제	25세
네 극	6년제	26세
	의과·치과·한의대	27세
	2년제	26세
대학원	5, 6학기제/박사과정	27세
	의·치·수의·한의과	28세

다. 입영연기 제한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징병검사, 입영기피 및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위반 한 사람
- 도망, 잠적 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2. 재학 중 입영을 원하면 재학생 입영원서를 제출

가.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터넷으로 신청 (홈페이지 → 전자민워창구 → 재학생 입영신청)
- 나. 재학생 입영원서 희망시기 기재
 - 다음연도 입영희망자의 입영시기 기재는 현역은 월 별, 보충역은 분기별로 기재(학기, 학년말 입영희망

- 자 복학 보장을 위한 입영시기 최대한 반영)
- * 병역자원의 수급 및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 영 희망시기 반영이 곤란한 경우 접수순으로 입 영통지
- 19세에 수검을 받은 후 그해 조기 입영(10~12월)을 원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장 또는 민원실에 당해연도 입영희망원서 직접 출원
- 다. 입영원서 출원에 따른 이점
 - 입영통지서 수령 후 군입대를 위한 휴학계 학교에 제출
 - 학업 공백 없이 수업 가능

3. 입영희망시기 변경을 원하면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서 를 제출

- 가. 출원기관 : 거주지 관할지방 병무청(사무소) 또는 시·군·구·읍·면·동
- 나. 입영희망시기 변경은 1회에 한하며 입영 통지된 사 람은 제외됨

4. 입영원의 취소를 원하면 입영원 취소원서를 제출

가.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터넷으로 신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재학생 입영취소신청)

사 유 별	증 빙 서 류
타대학 편입학폐교(과)유학학군사관후보생 지원군장학생 선발	학교장 확인서
- 본인 질병	진단서
- 부·모 병 간호	진단서, 주민등록표등본
- 학업 계속	재학증명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병 무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기타 필요한 증빙서

- 나. 아래사유로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통지여부에 관계 없이 취소
- 다. 입영원 취소의 제한
 - 희망시기 변경원 출원자
 - 입영원 취소 후 당초 입영일로부터 다음 학기이내 제출원시 당초 입영부대로 입영

■ 장학 및 학생복지

Kangnam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장 학 금 지 급 규 정 학 생 복 지 시 설 진로 및 취창업지원 마음 나눔 센터



장학금지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칙 제59조에 의하여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교의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무관장)본교 장학에 관한 사무는 장학복지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8.08.01>

제4조(위원회)본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학생 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한 다.

제2장 장학금

제5조(구분)장학금은 교내와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종류)①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06.19, 2012.10.25, 2012.11.27, 2013.07.12, 2013.12.24, 2014. 9.24, 2014.12.29, 2015. 4.17, 2016.09.02, 2017.02.21, 2017.10.20, 2017.12.21, 2018.02.01, 2018.05.30, 2019.01.18, 2020.01.06, 2020.05.29, 2021.06.17, 2022.05.25, 2023.01.27. 2023.01.27, 2024.02.22>

- ② 교외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고 지급기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06.19.>
- ③ 교내장학금 중 KNU Kairos 장학금의 지급 세부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23.07.03.>

제3장 장학금 배정

제7조(계획수립)①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장학금 지급계획안은 다음 각호 1에 의한 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 1. 장학생 선정기준
- 2. 장학금지급 기준액
- 3. 장학금 재원 및 지급예산 산출표
- 4. 교내 성적장학금 인원배정표
- 5. 직전학기 장학금 지급 내역

제8조(인원배정)장학금배정은 별도 지급기준이 없는 한학부(과)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제4장 장학금 신청

제9조(신청자격)본교 학생으로서 교내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별표 1의 각호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방법)① 장학금의 지급신청은 매학기별로 한다.

- 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부(과) 또는 각 교학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2019.05.27>
- 1. 장학금신청서
- 2. 성적증명서
- 3. 국가고시 합격증
- 4. 재직증명서
- 5. 보훈대상자 증명서
- 6. 기타 증빙서류

제11조(신청자격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10.25, 2019.05.27, 2022.05.25, 2023.07.03.>

- 1. 징계(유기정학 이상)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기타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 3.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미등록휴학, 재입학, 복학, 편 입학한 자
- 4. <별표 1>의 기준성적 미만 자
- 5. 신입생성적장학금, 교육보호장학금, 국가고시장학 금에 한하여 재입학한 자
- 6. 정규학기(8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
- 7. 이중언어과정(중국어트랙),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입학자 <신설 2022.05.25.>

8. 직전학기 최소 수상신청학점 미만 신청자 <신설 2023.07.03 >

제5장 장학생 추천

제12조(추천과정)각 학부(과)장은 지급기준에 의거 장학생을 추천하고, 해당 교학팀은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복지팀으로 통보한다. 단, 장학복지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추천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2020.01.06>

제13조(추천기준)제12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으로 추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08.01, 2020.01.06>

- 1. 학업성적
- 2. 가정형편
- 3. 장학생수의 학년간 균형유지
- 4. 학적변동사항
- 5. 제11조 (신청자격제한)
- 6. 제16조 (이중추천금지)

제13조의2(추천심의)<삭제 2020.01.06>

제14조(동점자 처리기준) 성적장학금 추천자중 동점자에 대하여는 다음 순위를 적용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3.07.12>

- 1. 취득(신청) 학점수가 많은 자 (최대 수강신청 학점 기준 대비 학생 수강신청 학점 비율 적용)
- 2. <삭제 2015.04.17>
- 3. 직전학기 평균평점 우수자
- 4. 연소자
- 5. 입학년도가 빠른 자

제15조(교체추천)장학생으로 이미 추천받은 학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하고자할 경우, 해당 학부(과)장은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 1. 본규정 제11조(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2. 본인이 포기하였을 경우
- 3. 이중지급 선발된 경우(제16조의 예외 경우 제외)
- 4. 기타 본 규정에 위반하여 선발된 경우

제15조의1(후반기 졸업생 성적장학금 추천)후반기 졸업

생의 최종 학기 성적장학금은 3학년으로 간주하여 (기준학점: 2012학년도 이전입학자 18학점, 2013학년도 이후입학자 16학점) 3학년 성적과 비교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2.10.25, 2013.07.12>

제16조(이중수혜금지)①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다. 다만, 다음각 호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6.19, 2013.07.12, 2017.12.21>

- 1. 근로, 학업보조비, 생활비,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KNU리더십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 금
- 2.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장학금
- ② <삭제 2017.12.21>
- ③ 학비감면 성격의 교내장학금 이중수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의 장학금하나만 인정한다. <신설 2013.07.12>

제17조(외부장학생 추천)교외 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호 1에 의한다. <개정 2008.08.01>

- 1. 해당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의뢰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부(과)장 또는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 명의로 추천한다.
- 2.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3. 교외장학금을 학교를 통하여 지급할 때에는 학교에 입금 후 전달한다.
- 4. 해당 학부(과) 및 인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외 장학생수의 학부별 균형을 참작하여 학생처장이 선정하여 배정하고 해당 학부장 또는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 명의로 추천한다.

제6장 장학금 지급

제18조(지급시기 및 금액)교내장학금의 지급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초에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9조(지급중지 및 회수)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비감 면 및 장학금 지급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학비감면을 받거나 수



령한 장학금은 회수한다.

- 1. 본규정에 위배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
- 2. 장학금의 신청절차 및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

제20조(배분기준)본교의 장학금은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을 학비감면하며, 이중 30%이상을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개정 2012.06.19>

제21조(지급방법)장학금 지급방법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해당금액의 학비 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현금으로 지급할 수있다.

제22조(지급결정 유효기간)장학금의 지급결정은 해당학 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지급보고)학생처장은 매학기별로 장학사무 및 지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체육특기자 장학금 지급

제24조<삭제 2021.06.17.>

제25조<삭제 2021.06.17.>

제26조<삭제 2021.06.17.>

제8장 기타

제27조(보칙)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의 장학내규 또는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9.02.19]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의 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2) 종전에 시행하던 규정(1979.3.1)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3)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본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제2학년 이상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구 규정에 의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규정은 198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규정은 198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12) 1.(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2.(폐지규정)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사용하던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규정 '와 동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13) 이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 이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7)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18) 이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19) 이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0)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1)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2)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3) 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2.(경과조치)2001학년도 특차모집 최종합격자로서 수능변환표준점수 총점 계열별 상위 6%이내인 자로입학한 자는 특차장학금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수업료를 재학기간의 2년간(기준성적 3.0이상) 면제토록 한다.
- (24)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5) 이 개정규정은 200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되, 본 개정규정 시행전에 소년 · 소녀가장 특별전형으로 입학 한 자도 교육보호장학금 수혜자격을 인정한다.
- (26)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7) 이 개정규정은 2004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8)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9) 이 개정규정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30) 이 개정규정은 2006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31)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2)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33)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4)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5) 이 규정은 201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36) 이 규정은 2012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3학 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37)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입생성적 장학금, 교육보호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에 한하여 신청자격 제한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38)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39)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며,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013학년도 신입학자와 2015학년도 편입학자로,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2학년도 이전 신입학자와 2014학년도 이전 편입학자로 한다.
- (40)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4 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1) 이 규정은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5학 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2)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5 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3)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5년 4월 17일부로 시행하며, 신입생 관련 장학금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4) (경과조치)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로부터 시행하며, 신입생 관련 장학금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5)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46)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47) 이 규정은 2017년 02월 21일부로 시행하며, 관련 장학금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8)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49)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50) 이 개정규정은 2018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51) 이 규정은 2018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52) 이 규정은 2019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53)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54)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55)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56) 이 규정은 2021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57) 이 규정은 202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58) 이 규정은 2023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59) 이 규정은 2023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60) 이 규정은 2024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개정 2009.02.19, 2009.09.01, 2010.03.01, 2012.06.19, 2012.10.25, 2012.11.27, 2013.07.12, 2013.12.24, 2014.09.24, 2014.12.29, 2015.04.17, 2015.12.29, 2016.09.02, 2017.02.21, 2017.10.20, 2017.12.21, 2018.02.01, 2018.05.30, 2019.01.18, 2020.01.06, 2020.05.29, 2021.06.17, 2022.05.25, 2023.01.27, 2023.07.03, 2024.02.22.>

	2019.01.18, 2020.01.06, 2020.05.29, 2021.06.17, 2022.05.25, 2023.01.27, 2023.07.03, 2024.02.22.> 지급기순				
장학	금 구분	수 혜 자 격	기 순 성적	장학금 지급액	
	우원 <u>장</u> 학 금	성시모집 죄송합격자 중 선제 수석자(수능) 수시모집 악생부송압(서류면접선형) [삼새역 량우수사(2016악년도 이전 악교생활우 수자)] 최종합격자 중 전체 수석자	3. 0이 상	수업료 (4년간)	
	목양장학	정시모집 최종합격자 중 전체 차석자(수능) - 수시모집 악생무종압(서류면접전영) [참새떡 당우수사(2016악년도 미전 악교생활우 - 수자)] 최종합격자 중 전체 차석자	3. 0이 상	수업료 (2년간)	
	K-상학 금	- 수능 영어 2능급 이내이고 국어, 수학 영역 백문위 평균이 85이상인자 중 신입생 최 - 종합격자	3. 0이 상	수업료 (4년간)	
01	N-상학 금	수능 영어 2능급 이내이고 국어,수학 영역 백문위 평균이 80이상인자 중 신입생 최 종합격자	3. 0이 상	수업료 (2년간)	
입 장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는 장학	정시모집 최종합격자 중 입학성적 학부/학과 수석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서류면접전형) [잠재역량우수자(2016학년도 이전 학교생활우 수자)] 최종합격자 중 학부/학과 수석자(서류평가+ 면접평가) 단, 예제능계열은 실 기전형을 포함하여 입학성적(총점) 우수자	첫학 기	수업료 전액 (1 학기)	
	수시우수 장학금	소시모집 학생분종합(서류면접전형) [잠재역량우수자(2016학년도 이전 학교생활우수자)] 최종합결자 중 각 모집단위에서 입학성적(서류평가+면접평가) 상위 30%이내인 자(2017학년도 이후 압학자)	첫학기	수업료 50% (1 학기)	
	070	구시모집 학교생활우수사선영 죄송압격사 중 각 모집단위에서 입학정석(서류평가+ 면접평가) 상위 30% 이내인 자(2016학년도 입학자)	3. 0이 상	수업료 1 0% (2년간)	
	정시 우수 장학금	정시모집 최종합격자 중 각 모집단위에서 입학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2017학년 도 이후 입학자) (단, 각 모집단위 모집인원 10명 미만인 학과는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	첫학기	수업료 50% (1 학기)	
		정시모집 최종합격자 중 각 모집단위에서 입학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2016학년 도입학자) (단, 각 모집단위 모집인원 10명 미만인 학과는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	3. 0이 상	수업료 10% (2년간)	
재학생 성적장 학금	학년수석 학년우수	전학기 16학점 이상 취득(단,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18학점 이상), 4학년은 12 학점 이상 학과목(Pass/Fail 과목 포함) 과탁이 없는 자	3. 00	수업료 67% 수업료 47%	
악금 근로상 학금	수시근로	교내 학과 및 부서에서 업무를 돕는 자	상	무집 표 4/% 일정액	
학금			7014	204	
보훈 장학금	차 차급	국간윤공자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 손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70점 이장	수업료 전액 (교육법령에 의함)	
	국가유공 자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KNU 장	Kairos 학금	글로벌인재대학 기독교학과로 입학한 자(재학 중에도 소속 유지 시 적용)	2. 5이 상	수업료50% (4년간)	
새터'	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70점 이장	수업료50%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70점 이장	수업 료 (관계법령에 의함)	
군위탁생장학금 KNU리 너십상학 금		군위탁생으로 입학한 자 중약생회 및 학생회 임원, 악부/악과 학생회상	2. 50	수업료 50%	
Ш		중악생회 및 악생회 임원, 악무/악과 악생회상 학교가 승인한 학생 자치단체 임원 국가고시(사법, 행정, 기술) 및 외교관 우보사 전말시엄,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엄에	상 2. 5이	일정액	
국가_	<u></u> 시장학금	최종합격한 자	상	수업료 전액	
공로	장학금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였거나 선행/봉사 등을 하여 학교발전 및 명예를 빛 납 자 국가고시 7급.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선발기준은 별도지침에 의함		일정액	
교육보	호장학금	기외균영, 기조생활수급권사 및 자상위계증선영 입학사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3. 0이 상	수업 료50% (4년간)	
교육지원	원 장학금	농어 존학생 특별전형 입학자 중 본교 기숙사 입사생	-	일 정 액 (1년간)	

		지 급 기 순		
	금 구분	수 혜 자 격	기준 성적	장학금 지급액
교직	원가족 학금	본교 교직 원.강남학원 임직원 자녀 및 배우자	2. 5이 상	수업료 전액
목회	자자녀 학금	본교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현재 시무중인 목사, 성공회 신부, 전도사, 선교사의 자녀 로서 재학 중인 자	2. 5이 상	수업료 일정액
특별	장학금	종장이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일정액
	랑 장학금	경제사정 및 가계곤란 재학생	2. 0이 상	수업료 일정액
외궁	어우수 학금	공인외국에능력평가시험 우수성적 취득자 선발기준은 별도지침에 의함	3. 0이 상	일정액
심전 장	생활관 학금	심전생활관에 입사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일정액
형 제.자	매 장학금	본교 학생 중 형제.자매.남매가 동시 등록한 학기에 성적이 우수한 자(학생 1명에게 지급)	3. 0이 상	수업료 일정액
동문기	가족장학금	부 또는 모가 본교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한 자의 자녀	2. 5이 상	수업료30%
장애 학	우장학금	학생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2. 5이 상	수업료 일정액
OH 크ト코니	글로벌역 량강화	글로벌역량강화 관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글로벌챌린저, 해외문화탐방, 글로벌리 더쥡쐘린저, 외국어경시대화 등 시행부저 별도지침에 의함)		일정액
역 <i>량</i> 강 왕학금	취창업역 량강화	창업역량강화 관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학생역량진단, 직장체험, 인턴쉽, 자격취득지원, 우수이력서 등 시행부서 별도지침에 의함)		일정액
0 10	학습역량 강화	학습역량강화 관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학습공동체, 학습코칭, 맨토링, 또래상담 활동 등 시행부저 별도지침에 의함)		일정액
교환학	생 장학금	직전학기 16학점 이상 취득(단,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18학점이상), 4학년은 12 학점 인상 당 교무 현정서에 학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점으로 한다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보고 학생충 성적이 우수하자 다. 수혜자 수는 국가, 대학, 전공, 학년의 구분없이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배청인원비율과 동일하게 적용	3. 0이 상	학년우수 상당액
		학점교류 또는 복수학위과정인 경우 필요시 총장이 장학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2. 5이 상	일정액
	I	교환학생 파견자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관련부서 별도지침에 의함)	2 001	일정액
	A급		3. 8이	수업료 67%
	B급	외국인 재학생의 성적상위 30%이내	3. 5이 상	수업료 47%
외국인 장학금 장학금	C급		3. 3이 상	수업료 30%
창학금	D급	외국인 시 편입생으로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취득자 본교 한국어능력시험(KNKPT) 3급이상 취득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 자	첫학기	수업료 47%
	답급	외국인 신.편입생 및 재학생	2. 5이 상	기숙사비 25%
	복수학위 및 초청	해당 대학 및 재단 등과의 교류협정에 의함		해당액

- ◈ 신입생 성적장학금은 취업자, 만학도, 공무원위탁교육, 군위탁을 제외한 모든 입학자에 한함
- ◆ 우원장학금 및 목양장학금 수시 대상자는 평정결과(서류평가+면접평가)의 총점을 표준화(각 학부/학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동일하게 선형 조정) 방법에 따라 조정하여 반영하며, 정시대상자는 계열별 수능반영방식(예체능계열 은 인문사회계열 수능반영방식)에 의한 총점으로 반영함.
- ◈ 기준성적은 직전학기 성적
- ※ 신입생 성적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될 경우 상위의 장학금만 인정함
- ◈ 경천애인 디딤돌 장학금의 소득분위 대상 구분은 국가장학금 기준을 따른다.
- ◈ 외국인유학생장학금은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자에 한하며 직전학기 16학점이상(단,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18학점이상, 4학년은 12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 상기 교내장학금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 이중언어과정(중국어트랙),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입학자는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A급, B급, C급, E급 적용 제외



< 별표 2 > 교외 장학금 <개정 2010.6.25, 2012.06.19>

강남대 학교 교수협 의회 장학금 쌍용곰두리 장학금 (한국장에 인개 발원) 아름다운재 단 장학금 강남대학교 대학교회 선교장학금 엘지캐피탈(주) 장학금 강남대 학교 여 교수회 장학금 강남대 학교 직 원노동조합 장학금 영 양군 영 재 장학금 강남대 학교 총동문회 장학금 영 풍문화재 단 장학금 강남R& T장학금 (부동산, 세무 만학자모임) . 용인 시 시 민 장학회 장학금 . 우덕 재단 장학금 강생 장학회 장학금 . 우원기 념 사업 회 장학금 강우장학회 장학금 (재직교직원모임) . 운초 장학금 경 기 지 역 대 학교 총장협 의 회 장학금 . 월진재단 장학금 경의 장학회 장학금 (경제학과 동문) . 유료주차수익 장학금 . 육군 장학금 경일 장학금 고광래 장학금 . 윤송조창석 문화재 단 장학금 . 이 사장 장학금 공군조종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 이 지경 중학급 . 이 공계 우수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 단) . 인 문사회계 우수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 단) . 인 산장학문화재 단 장학금 (동방장학금) . 의 용소방대 원자녀 장학금 (지 역 소방서) . 장애 학우 장학금 (서 진수) . 장훈에 장학금 국가장학금 | 유형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1 유형 (한국장학재 단) 광주시 민장학회 장학금 금옥학술문화재 단 장학금 기 쁜우리 복지 관 장학금 (기 쁜우리 월드) 기 소재 단 장학금 . 정산장학재 단 장학금 . 정윤, 이제설 장학금 . 정인 욱학술장학재 단 장학금 (주: 삼표) . 졸업생 장학금 기탁 장학금 농촌희 망재 단(KRA) 장학금 대 룡정 보통신(주) 장학금 덕 천장학회 장학금 독지가 장학금 디 딤 돌 장학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미 래 에 셋박현주재 단 장학금 방순열여사 장학금 보훈처 (국가유공자) 장학금 . 충남당진소방서 장학금 . 푸른강남회 장학금 (만학자모임) 복지 장학금 사랑드림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사보이 장학회 장학금 . 하림 장학재 단 장학금 삼성 캐 피 탈(주) 장학금 . 한국감정 평 가협 회 장학금 . 한국노총장학재 단 장학금 삼송장학회 장학금 . 한국지도자육성 장학재 단 장학금 . 한국학술진흥재 단 장학금 사회 지 봉장학재 단 장학금 서 울국제 장학재 단 장학금 . 한국후지 제 록스 장학금 설립자(우원) 장학금 . 한미은행 장학금 성 남시 장학금 수범 장학금 . 해 군 장학금 수인 장학재 단 장학금 . 해 성 문화재 단 장학금 승희 장학문화재 단 장학금 . 행정학과동문회 장학금 신갈로타리 클럽 장학금 현대 캐 피 탈(주) 장학금 형 애 장학회 장학금 신라문화장학재 단 장학금 심 전국제 교류재 단 장학금

◈ 선정기준은 외부 장학재단(장학회) 규정에 의함.

<별표3> Kairos 장학금 지급 세부 기준 <신설 2023.07.03.>

번호	Kairos 장학금 지급 세부 기준
1	지전학기 기독교학전공에 편성된 전공기초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한 자(해당 기준은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적용함)
2	직전학기 기독교학전공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기독교학전공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 45학점 이상(전공기초 6학점 포함) 이수한 자

[※] 기독교학전공이 제1전공인 자 중 추천을 받은 자로 Kairos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에 한함 (학과•전공 및 소속부서 선발절차에 의함)



학생복지시설

교내 휴게실

경천관 1층, 천은관 2층, 샬롬관 1층에 위치한 Learning & Healing Zone 및 인문사회관 1층의 학생성 공센터 내 휴게실은 카페형 독서실의 형태로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과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으며 팀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세미나 룸을 갖추고 있다. 인문사회관 3층에 위치한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생만을 위한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으며, 샬롬관 1층에는 외국인 학생 전용 쉼터인 글로벌라운지가 위치해 있다. 도서관 옥상은 면학분위기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위해 친환경 그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샬롬관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16,334㎡에 이르는 샬롬 관은 최첨단 인텔리전트 건물로 설계되어 교수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3,500명의 학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60인 기준의 소강의실과 84인 기준 중강의실, 115인 기준 대강의실, 300석 규모의 계단형 강의실 등이 있으며 학장실과원장실, 교수연구실과 학생 및 교직원식당, 카페, 매점, 진료소, 행정실, 은행 등이 있다.

대학진료소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및 응급처치를 위하여 샬롬관 1 층 100호에 설치되어 있고, 교내환경 위생에 이바지하며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있다.

교내서점

인문사회관 1층에 위치한 교내서점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서적 및 교재를 저렴한 가격으 로 공급하고 있다.

후생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2층에는 대학 행정의 핵심인 전산정보원이 입주해 있다.

세무고시반

후생관 302호에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편의와 면학에 전력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습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심전센터

심전의 정신을 이어받은 최신식 대규모의 기숙사로서 심전 제1관(구기숙사), 심전 제2관(신기숙사), 산학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심전 제1관: 기존 기숙사를 현대적이며 역동적인 칼 라로 리모델링하여 입주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을 제공하고 있다.
- 심전 제2관: 국내 최초로 단위 유니트 방식을 적용한 최신식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서 학생들은 2인1실의 방3개와 개인 샤워시설, 거실, 베란다 등 쾌적한 주거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학숙소동은 대학원생 및 외부연구원, 교직원, 원어민 강사들이 입주하여 독립적인 주거시설로서 활용하고 있다.
- 심전 산학관: 평생교육원, 대학부설유치원, 공과대학 실습실이 위치하여 학교를 외부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다양한 실무교육 및 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 부대시설: 심전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식당, 남 여도서관, 휴게실, 학생상담실, 체력단련실, 매점, 세탁실 등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력단련시설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향상과 심신의 단련을 위하여 본교에는 대운동장 1개소 농구장 2개소와 다용도코트 1개소, 풋살장 1개소, 체력단련실 1개소를 설치하여 개 방하고 있다.

각종 휴게시설

넓은 캠퍼스 곳곳, 호수 주변 및 숲속, 아늑한 벤치 등의 휴식공간시설이 되어 있어 대학 생활에서 정서함양과 학우 간 대화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진로 및 취창업지원

□개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학생 맞춤형 진로지도부터 체계적인 취업지원으로 실무기반 창의융합 역량을 갖춘 KNU 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부(과) 맞춤 진로 및취업상담 지도,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기업/직무분석, 채용전략분석 등을 제공함으로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직무적성을 파악하여 원하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창업지원팀은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창업보육 센터와 연계한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기반 조성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직무경험제공을 위하여 현장실습, 직무체험 및 인턴십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현장경 험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량있는 KNU 참인재 양 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 진로 [스스로 진로를 찾GO 싶다면]

강남서포트 솔루션	▶ 전주기 맞춤형 진로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저학년 대상 진로, 적성 상담 운영
강남커리어 솔루션	 ▶ 취업상담- 기업체 발굴, 이력서, 자소서 준비, 대외활동준비 등 ▶ 고학년 대상 진학, 취업, 창업 상담 운영
진로 부트캠프	▶ 저학년 대상(1학년~2학년 재학생) 운영▶ 상담연계를 통해 자기주도 진로설계 가능

2. 취업 [졸업하기 전 취업잡GO 싶다면]

Job Crew	▶ 학부(과) 전공 연계 취업동아리 활동 및 지 도교수 멘토링을 통한 취업 정보 공유 ▶ Crew 활동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 및 취업 정보 공유
강인한 HEROES	 ▶ 센터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이 특화 분야별 운영하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분야별 진로설계 및 자기주도 역량 강화 지원
직무 페스티벌	내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와의 만남으로 직무 이해도 향상 및 취업 준비자기주도적 취업 계획 설계 가능

□ 창업지원팀

창업 동아리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멘토링 실시 월례회의 참석, 창업 비교과 참여, 성과보고서 참여 필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예비창업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참여자 선발, 발표회 참여 필수
창업캠프	 ▶ 방학기간 중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 대 상으로 심화교육 시행 ▶ 사업계획서작성법 및 IR스피칭 등을 통한 창업역량 강화
KNU창업 사관학교	▶ 강남대학교 창업 교육 시스템의 최상위 단계 ▶ 학생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학기 현장실습

참여대상: 3학년~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수료, 5



학기 이상 등록한 자)

- 실습기간 : 단기현장실습(방학), 장기현장실습(학기)

- 참여혜택: 실습학기제 현장실습 학점인정 및 장학

금 지급

마음나눔센터

™ 센터장 : 김은하

□ 설립목적

마음나눔센터는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각종 프로그램 및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고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비스 기관입니다.

□ 주요업무

1. 개인상담

- 전문상담자와 정기적인 1:1 대면관계를 통하여 개인 상담은 생활 속 어려움과 불편감을 해소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상담자와 함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 는 과정입니다.
- 모든 상담의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2. 집단상담

-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함께 힘 을 합하여 모두의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 가능하며, 10명의 인원 으로 집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준비된 프로그램은 발표력 향상 집단상담, 진로탐색 집단상담, 스트레스 관리 집단상담, 대인관계 증진 집단상담, 미술치료 집단상담 등입니다.
- 구체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매학기 추후 공지됩니다.

3. 심리검사

-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제작된 심리검사

를 통해 개인의 인지, 성격, 정서, 흥미, 적성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심리검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심리검사 종류

	소요시간		
	검사 종류 성격유형검사(MBTI)	약 20분	
인성 및 성격검사	다면적인성검사(MMPI)	약 40분	
	문장완성검사(SCT)	약 20분	
	다요인인성검사(16PF)	약 20분	
	심리역동검사(Enneagram)	약 20분	
	성격5요인검사	약 40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특성을 하는 검사입니다.	파악하고자	
진로 및 적성탐색 검사	적성탐색검사(MCI, SLT)	약 20분	
	자기조절학습검사(SLT)	약 20분	
	진로사고검사(CTI)	약 20분	
	개인이 어떤 특성 직무나 활동을 필요한 종류의 적성을 갖고 있는지 판정해 봄으로써 미래의 성공 가능 준을 예측해 보는 검사입니다.	지의 여부를 성과 그 수	
특별검사	지능검사(K-WAIS)	약 2시간	
	지능검사로 자신의 잠재능력을 찾아내고 인 지, 정서, 행동적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투사검사(IAI, 도샤, HIP, KFD)		
	지필검사형식을 벗어나 그림과 글 성격의 내면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4.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 학내 성관련 폭력 근절을 위하여 재학생 대상 연1회 법정 필수교육인 "성폭력예방교육 1시간, 가정폭력 예방 교육 1시간"을 운영하고 교내 성관련 폭력 근 절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 다.

5. 기타 활동

가. 또래상담자 양성과정

-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가진 학생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의 다른 또래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조력하여 이들이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반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매 학기 서류 및 면접 과정을 통해 또래상담자를 선 발합니다.

나. 신입생중도탈락예방 프로그램

- 전환기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적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신·편입생 대상 성격5요인검사 결과 심층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다.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학년에 걸쳐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및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심층적 인 개인상담을 통해 재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을 지원 합니다.
- ABA 프로그램 연계 대상자 중 신청자, 그 외 자해 자살 등 위기상담 개입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라. 더 레인보우 특강

- 재학생들의 마음건강·심리·사회·인성적 측면을 포괄 하는 통합적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기이 해, 정신건강, 대인관계 및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강화 등의 주제로 단회기 특강을 지원합니다.

마. 마음약국 이동상담실

- 목양축전 및 백양체전 기간 동안 접근성이 어렵고 빈도가 낮은 학부(과) 소속 강의건물 등 이동부스를 설치하여 재학생들에게 마음나눔센터 프로그램 소 개 및 심리검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 다.
- "대학생의 스트레스관리", "대인관계 역량 경하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인성과학문 연계 및 학부(과)별 신청 등의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교과와 연계한 심리검사, 특강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목양축전 기간 동안 이동부스를 설치하여 마음나눔 센터와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성문화 축제, 문화다양성 및 생명사랑 축제 등을 운영합니다.

사. 자살예방 지원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교육을 통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주변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살에 대한 징후 파악 등에 대 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급증에 따라 현실과 인터 넷 공간에서의 활동을 동일시하는 문제가 증가하는 바 이에 대한 대처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원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대학 생 연1회 법정 의무 교육으로 해당 교육을 통해 대 학 학생들의 자기계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 다.

자. 약물중독예방교육

 한국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약물중독에 대한 경각심 함양을 위하여 정신과전문이의 약물중독 예방에 대한 이해 확장, 약물중독의 폐해를 인지하고 자기 자신과 주변인을 보호, 약물중독으로 인한 학업부진 및 부적응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차. 신입생 실태조사연구지 발간

- 신입생들의 개인적 특성, 생활환경과 같은 기초적 내용과 대학생활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매년 조사하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신입생들의 수요 및 의견을 파악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보다 내실 있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